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666호 2022. 4. 11.(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_\_\_\_\_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_\_\_\_\_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_\_\_\_\_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_\_\_\_\_ 2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5호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_\_\_\_\_ 43

##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5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5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4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3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 54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58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 64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8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0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1호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94

## 차 례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5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9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52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변경) 공고 10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재  
공고 10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66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1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68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11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3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은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지방재정법 제100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 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식품 산업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 같은 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같은 법 제19조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폐지·휴지· 재개신고, 폐쇄 등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위·해촉 -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및 퇴원등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53조~제59조, 제64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p>처우개선 심사 청구</p> <p>-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명령 등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p> <p>-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p> <p>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p>	같은 법 제11조	
	10	<p>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p> <p>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p> <p>다. 청문</p>	<p>「건강검진기본법」제1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같은 법 제1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p>	
	11	<p>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 및 변경등록</p> <p>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시정명령</p> <p>마. 업무 개시 명령 등</p> <p>바. 폐기 명령 등</p> <p>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p> <p>아. 시설개수명령 등</p> <p>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p> <p>차. 등록취소</p> <p>카. 청문</p> <p>타. 등록증 등의 갱신</p> <p>파. 과징금 처분</p> <p>하. 과태료 부과.징수</p>	<p>약사법 제44조의2</p> <p>같은 법 제44조의2</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69조의4</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1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6조</p> <p>같은 법 제76조의3</p> <p>같은 법 제77조</p> <p>같은 법 제80조</p> <p>같은 법 제81조</p> <p>같은 법 제98조</p>	
	12	<p>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p> <p>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p>	<p>약사법 제45조</p> <p>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p>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13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1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6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7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의료법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부속기관의료 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19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20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변경 허가 등 나. 출입.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2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2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운영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담당관단과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26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5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95명”을 “1,4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370명”을 “1,40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별표 3 】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 계	1,43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427	-				
2급	1	1				
4급	8	6	1	1		
5급	73	39	2	8	1	23
6급 이하 계	1,345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별정직 계	3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6호

###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다른 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③ 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실(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한다.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통과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 민간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30세”를 “만18세”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를 신설한다.

1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50퍼센트 감면

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제8조제3항을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연장”을 “5년 이내에서 연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3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입관료)”를“(입장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관료”를 “입장료”로 한다.

제6조의 제목“(입관의 제한 등)”을“(입장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를 “관장은”으로, “입관을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를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1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을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서구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이행상황 점검)** 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 건설인 선정·포상)** ① 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5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환경, 지구환경”을 “자연환경”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하·지표”를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물, 폐기물”을 “물, 토양, 폐기물”로, “악취”를 “악취, 일조(日照), 인공

조명,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악취”를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오염”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으로, “오염된”을 “오염되거나 훼손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

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8.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9.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9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85조”를 “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9조 중 “제86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58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43조”를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3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432	857	25	134	47	369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427	852	25	134	47	369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8	6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관·기술서기관	4	4					
5급 소계		73	39	2	8	1	23	
	행 정	10	8	2				
	의 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5	5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한 경	2	2					
	행 정 · 시 설	12	12					
	행 정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한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2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허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1	1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녹지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2			2			
	<b>6급 소계</b>	<b>321</b>	<b>222</b>	<b>9</b>	<b>21</b>	<b>12</b>	<b>57</b>	
행	정	91	74	5	1	1	10	
세	무	18	16			2		
전	산	1	1					
사	회	18	18					
속	기	2		2				
공	업	8	7			1		
농	업	1	1					
녹	지	6	5			1		
수	의	1	1					
보	건	5	5					
의	료	1			1			
간	호	1			1			
한	경	6	6					
시	설	27	25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방 송 통 신	1	1					
	운 전	6	3	1		1	1	
	전 하 상 담 운 영	1	1					
	사 무 운 영	4	2				2	
	행 정 · 세 무	13	9			1	3	
	행 정 · 사 회 복 지	41	9	1			31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행 정 · 간 호	1					1	
	행 정 · 한 경	7	5				2	
	행 정 · 시 설	13	13					
	행 정 · 방 송 통 신	4	3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공 업 · 보 건	1	1					
	공 업 · 한 경	1	1					
	녹 지 · 시 설	1	1					
	보 건 · 간 호	1			1			
	보 건 · 한 경	1	1					
	식 품 위 생 · 간 호	1			1			
	의 료 기 술 · 간 호	2			2			
	한 경 · 시 설	1	1					
	시 설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세 무 · 공 업	1					1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세 무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한 경	2	2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2			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허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b>7급 소계</b>	<b>426</b>	<b>258</b>	<b>8</b>	<b>46</b>	<b>16</b>	<b>98</b>	<b>(1)</b>
행	정	157	89	8		3	57	(1)
세	무	20	18			2		
전	산	6	6					
사	회	65	34				31	
공	업	9	8			1		
농	업	1				1		
녹	지	9	7			2		
수	의	3	3					
해	양	1	1					
보	건	17	11		5	1		
의	료	4			4			
간	호	25			25			
한	경	12	12					
시	설	55	50			5		
방	재	1	1					
방	송	4	4					
운	전	8	1		1		6	
기	계	1	1					
사	무	2					2	
행	정	3	2			1		
행	정	4	2				2	
행	정	1	1					
행	정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시설	4	4					
농업	수의	1	1					
보건	간호	6			6			
보건	환경	1	1					
식품위생	의료기술	2			2			
보건	의료기술·간호	3			3			
8급 소계		395	211	4	49	13	118	(5)
행정		141	72	3	2		64	(5)
세무		9	8			1		
전산		2	2					
사회복지		68	24		2		42	
공업		14	14					
농업		1	1					
녹지		8	7			1		
보건		8	4		1	3		
의료기술		1			1			
간호		31			31			
환경		17	17					
시설		45	39			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운전		13		1	1		11	
기계운영		1	1					
행정	전산	1	1					
행정	사회복지	7	6				1	
행정	공업	1	1					
행정	농업	2	1			1		
행정	간호	1			1			
행정	시설	5	5					
사회복지	시설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공업·보건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2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9급 소계	203	115	1	9	5	73	(3)
행	정	83	38	1	2	2	40	(3)
세	무	14	13			1		
사	회 복지	38	6		1		31	
공	업	6	6					
농	업	1	1					
녹	지	6	4			2		
보	건	3	1		2			
의	료 기술	2			2			
한	경	9	9					
시	설	22	22					
방	재 안전	1	1					
방	송 통신	3	3					
운	전	3			1		2	
행	정·세무	3	3					
행	정·사회복지	4	4					
행	정·보건	1	1					
행	정·환경	2	2					
행	정·시설	2	1		1			
연	구 직 계	1	1					
기	록 연구사	1	1					
별	정 직 계	3	3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형	의허	보건소	출장소	등	비고 (행정복지)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 상당 소계	2	2					
비	서	2	2					
	9급 상당 소계							
비	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35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본청 사무분장표 (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감사담당관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
	3.	비위공무원 처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5.	청원진정서 처리(다수인 민원 포함)
	6.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
	7.	사무인수인계사항 확인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9.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감찰
	10.	청렴도 관련 업무
	11.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2.	회계에 대한 실지 감사
	13.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14.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15.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16.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17.	가로환경 순찰 업무
	18.	인권보장 및 증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안전총괄과	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
	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8.	이재민 관련 업무
	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10.	국가기반시설 재난상황보고
	11.	사회복무요원 관리
	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13.	전시병무업무
	14.	충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
	15.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16.	재해 및 일반구호
	17.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
	1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20.	재난관리기금 운용
	2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22.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24.	민방위 준비명령
	25.	민방위대 검열

부서명	분장사무
	26. 민방위 시설물 관리
	27.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
	28.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9. 안전문화운동 전개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2.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총괄 지휘
	33.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4. 통합관계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계획 수립
	35.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36. 통합관계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3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38.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9. CCTV민원(새울, 반상회, 전화, 방문, 진정, 집단민원 등) 처리
	40. 관계인력 채용 및 관리
	41. CCTV관련 부서·유관기관(시청 관련부서, 경찰, 학교) 업무협의
	42.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3. 여성안심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4.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총괄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 개발사업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수행)
	4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업
	46.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47.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103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초·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

다.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보호관찰소의 장

아.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젠더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

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7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1,432</b>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b>1,427</b>	
		2급	1	행정 1
		4급	8	행정 2, 기술 2, 행정·기술 4
		5급	73	행정 10, 의무 4,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보건·시설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321	행정 91, 세무 18, 전산 1, 사회복지 18, 속기 2, 공업 8, 농업 1, 녹지 6, 수의 1, 보건 5, 의료기술 1, 간호 1, 환경 6, <b>시설 27</b> , 방송통신 1, 운전 6,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4, 행정·세무 13, <b>행정·사회복지 41</b> ,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녹지 2, 행정·보건 5, 행정·간호 1, 행정·환경 7,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4, 사회복지·간호 1,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간호 1, 보건·환경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보건·간호 2,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26	<b>행정 157</b> , 세무 20, 전산 6, <b>사회복지 65</b> , 공업 9, <b>농업 1</b> , <b>녹지 9</b> ,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7, 의료기술 4, <b>간호 25</b> , 환경 12, <b>시설 55</b> , 방재안전 1, <b>방송통신 4</b> , <b>운전 8</b> , 기계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b>행정·농업 1</b> ,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b>보건·간호 6</b> , 보건·환경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395	행정 141, 세무 9, 전산 2, 사회복지 68, 공업 14, 농업 1, 녹지 8, 보건 8, 의료기술 1, 간호 31, 환경 17, 시설 45,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13, 기계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7, 행정·공업 1, 행정·농업 2, 행정·간호 1, 사회복지·시설 1, 행정·시설 5,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3, 보건·환경 2,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203	행정 83, 세무 14, 사회복지 38, 공업 6, 농업 1, 녹지 6, 보건 3, 의료기술 2, 환경 9, 시설 22,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운전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2
	별정직	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구 분 청	계		857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852	
		2급	1	행정 1
		4급	6	행정 1, 기술 1, 행정·기술 4
		5급	39	행정 8, 행정·사회복지 5, 행정·공업 2,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2, 행정·방송통신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시설 1, 행정·농업·수의 1, 행정·녹지·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222	행정 74, 세무 16, 전산 1, 사회복지 18, 공업 7, 농업 1, 녹지 5, 수의 1, 보건 5, 환경 6, 시설 25, 방송통신 1, 운전 3, 전화상담운영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9, 행정·사회복지 9, 행정·공업 2,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5, 행정·시설 13, 행정·방송통신 3, 공업·보건 1, 공업·환경 1, 녹지·시설 1, 보건·환경 1, 환경·시설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공업·환경 2, 행정·공업·시설 1, 행정·보건·환경 1, 행정·환경·시설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258	행정 89, 세무 18, 전산 6, 사회복지 34, 공업 8, 녹지 7, 수의 3, 해양수산 1, 보건 11, 환경 12, 시설 50, 방재안전 1, 방송통신 4, 운전 1, 기계운영 1, 행정·세무 2, 행정·사회복지 2, 행정·농업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4, 농업·수의 1, 보건·환경 1
		8급	211	행정 72, 세무 8, 전산 2, 사회복지 24, 공업 14, 농업 1, 녹지 7, 보건 4, 환경 17, 시설 39,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기계운영 1, 행정·전산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1, 행정·농업 1, 행정·시설 5, 사회복지·시설 1, 공업·보건 1, 보건·환경 2
		9급	115	행정 38, 세무 13, 사회복지 6, 공업 6, 농업 1, 녹지 4, 보건 1, 환경 9, 시설 22, 방재안전 1, 방송통신 3,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4, 행정·보건 1, 행정·환경 2, 행정·시설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9급		0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의회사무국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 2
		6급	9	행정 5, 속기 2, 운전 1,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7급	8	행정 8
		8급	4	행정 3, 운전 1
		9급	1	행정 1
보 건 소	일반직	소계	134	
		4급	1	기술 1
		5급	8	의무 4, 행정·보건·의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6급	21	행정 1, 의료기술 1, 간호 1, 사회복지·간호 1, 보건·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9,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46	보건 5, 의료기술 4, 간호 25, 운전 1, 보건·간호 6,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8급	49	행정 2, 사회복지 2, 보건 1, 의료기술 1, 간호 31, 운전 1, 행정·간호 1, 보건·의료기술 1, 보건·간호 3,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9	행정 2, 사회복지 1, 보건 2, 의료기술 2, 운전 1, 행정·시설 1
출 장 소	일반직	계	47	
		5급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6급	12	행정 1, 세무 2, 공업 1, 녹지 1, 시설 2, 운전 1, 행정·세무 1, 행정·농업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시설 1
		7급	16	행정 3, 세무 2, 공업 1, 농업 1, 녹지 2, 보건 1, 시설 5, 행정·세무 1
		8급	13	세무 1, 녹지 1, 보건 3, 시설 6, 행정·농업 1, 공업·환경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동	일반직	계	369	
		5급	23	행정·사회복지·공업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행정·사회복지·녹지 4, 행정·사회복지·보건 4, 행정·사회복지·환경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행정·사회복지·방송통신 1, 행정·공업·농업 2, 행정·보건·시설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행정·사회복지·녹지·시설 1
		6급	57	행정 10, 운전 1, 사무운영 2, 행정·세무 3, 행정·사회복지 31, 행정·녹지 1, 행정·보건 2, 행정·간호 1, 행정·환경 2, 행정·방송통신 1, 행정·세무·공업 1, 행정·세무·농업 1, 행정·세무·방송통신 1
		7급	98	행정 57(행정복지 1), 사회복지 31, 운전 6, 사무운영 2, 행정·사회복지 2
		8급	118	행정 64(행정복지 5), 사회복지 42, 운전 11, 행정·사회복지 1,
		9급	73	행정 40(행정복지 3), 사회복지 31, 운전 2

## [별표 2]

##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857	
감사담당관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개방형) 1
		6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7급	7	행정 5, 시설 2
소통협력 담당관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행정 3
		7급	5	행정 1, 전산 2, 사회복지 1, 시설 1
		8급	1	행정·전산 1
기획예산 담당관	일반직	소계	28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방송통신 1
		6급	9	행정 6, 세무 1, 방송통신 1, 전화상담운영 1
		7급	12	행정 11, 방송통신 1
		8급	2	행정 1, 방송통신 1
		9급	3	행정 1, 방송통신 2
미래기획단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 1(개방형)
		6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7급	3	행정 1, 환경 1, 시설 1
		8급	3	시설 2, 행정·시설 1
		9급	2	시설 2
스마트에코 시티추진단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6급	3	행정 1, 행정·방송통신 1, 환경·시설 1
		7급	3	시설 2, 방송통신 1
		9급	3	행정 1, 시설 1, 방송통신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홍 보 정 책 담 당 관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1
		6급	2	행정 1, 전산 1
		7급	6	행정 2, 전산 4
		8급	4	행정 2, 전산 2
		9급	1	행정 1
총 무 과		계	29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25	
		2급	1	행정 1
		4급	1	행정 1
		5급	2	행정·시설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1
		6급	8	행정 7, 운전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7
		9급	1	행정 1
		별정직	소계	3
	7급		1	일반비서 1
	8급		2	일반비서 2
공 동 체 협 치 과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1
		6급	4	행정 4
		7급	4	행정 4
		8급	6	행정 6
		9급	1	행정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재 무 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운전 1, 시설 1
		7급	9	행정 5, 시설 2, 운전 1, 행정·시설 1
		8급	6	행정 4, 공업 2
		9급	1	행정 1
세 무 1 과	일반직	소계	29	
		5급	1	행정 1
		6급	10	세무 6, 행정·세무 4
		7급	10	세무 9, 행정·세무 1
		8급	4	행정 1, 세무 3
		9급	4	세무 2, 행정·세무 2
세 무 2 과	일반직	소계	37	
		5급	1	행정 1
		6급	11	세무 8, 행정·세무 3
		7급	9	세무 8, 행정·세무 1
		8급	4	세무 4
		9급	12	세무 11, 행정·세무 1
민 원 봉 사 과		계	23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 1
		6급	6	행정 5, 사무운영 1
		7급	3	행정 3
		8급	7	행정 7
		9급	5	행정 5
	연구직	소계	1	
		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복 지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41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7급	14	행정 3, 사회복지 10, 행정·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8급	13	행정 1, 사회복지 10, 행정·사회복지 2
		9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노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5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2
		7급	5	행정 1, 사회복지 3, 행정·사회복지 1
		8급	3	사회복지 3
		9급	1	행정 1
장애인복지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6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2
		7급	5	사회복지 5
		8급	3	사회복지 2, 사회복지·시설 1
		9급	5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3
교육혁신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 1
		6급	5	행정 5
		7급	8	행정 6, 사회복지 2
		8급	3	행정 3
		9급	4	행정 4
가정보육과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7	행정 2, 사회복지 5
		7급	9	행정 3, 사회복지 6
		8급	10	행정 3, 사회복지 5, 시설 1, 행정·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아동행복과	일반직	소계	26	
		5급	1	행정·사회복지 1
		6급	4	행정 1, 사회복지 2, 행정·사회복지 1
		7급	9	행정 2, 사회복지 6, 보건 1
		8급	9	행정 2, 사회복지 4, 행정·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행정 <sup>72</sup>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1
		6급	7	행정 6, 행정·시설 1
		7급	5	행정 4,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6, 시설 1
클린도시과	일반직	소계	24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환경 1
		6급	5	환경 3, 행정·환경 1, 공업·환경 1
		7급	4	행정 1, 환경 3
		8급	8	공업 2, 환경 6
		9급	5	공업 1, 환경 4
환경관리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환경 1
		6급	3	환경 2, 행정·환경 1
		7급	3	환경 3
		8급	8	행정 1, 환경 7
		9급	4	환경 3, 행정·환경 1
기후에너지 정책과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공업·환경 1 (개방형)
		6급	3	공업 1, 행정·공업·환경 2
		7급	4	공업 3, 환경 1
		8급	2	공업 1, 행정·공업 1
		9급	1	행정·환경 1
생태하천과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환경·시설 1
		6급	7	행정 1, 공업 2, 시설 1, 운전 1, 보건·환경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7급	7	행정 1, 환경 2, 시설 4
		8급	4	녹지 1, 보건 1, 시설 2
		9급	3	행정 1, 공업 1, 시설 1
안전총괄과	일반직	소계	24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시설 1, 행정·시설 2, 행정·방송통신 1, 시설·방재안전 1, 행정·환경·시설 1
		7급	7	행정 2, 환경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8급	5	공업 1, 시설 1, 방재안전 1, 방송통신 2
		9급	3	행정 1, 시설 1, 방재안전 1
자 원 순 환 과	일반직	소계	36	
		5급	1	행정·보건·환경 1
		6급	10	행정 3, 환경 1, 행정·환경 3, 행정·시설 1, 공업·보건 1, 행정·보건·환경 1
		7급	10	행정 6, 보건 1, 환경 1, 행정·환경 1, 보건·환경 1
		8급	9	행정 3, 환경 4, 보건·환경 2
		9급	6	행정 4, 환경 2
공 원 녹 지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녹지·시설 1
		6급	7	녹지 5, 행정·녹지 1, 행정·방송통신 1
		7급	7	녹지 7
		8급	6	녹지 6
		9급	4	녹지 4
경 제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25	
		4급	1	행정·기술 1
		5급	1	행정·농업·수의 1
		6급	6	행정 4, 농업 1, 수의 1
		7급	11	행정 5, 수의 3, 해양수산 1, 행정·농업 1, 농업·수의 1
		8급	5	행정 1, 농업 1, 시설 2, 행정·농업 1
		9급	1	농업 1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공업 1
		6급	7	행정 3, 공업 2, 행정·공업 1, 행정·공업·시설 1
		7급	6	행정 3, 공업 1, 시설 1, 기계운영 1
		8급	3	행정 1, 공업 2
		9급	4	행정 2, 공업 2
식 품 산 업	일반직	소계	23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위 생 과		5급	1	행정·보건 1
		6급	7	보건 5, 행정·보건 2
		7급	9	보건 9
		8급	4	보건 3, 공업·보건 1
		9급	2	보건 1, 행정·보건 1
교 통 정 책 과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공업·시설 1
		6급	5	행정 3, 시설 1, 행정·공업 1
		7급	4	행정 3, 공업 1
		8급	5	행정 3, 공업 1, 시설 1
		9급	3	행정 2, 시설 1
주 차 관 리 과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시설 1
		6급	5	행정 3, 세무 1, 시설 1
		7급	3	행정 2, 시설 1
		8급	5	행정 4, 공업 1
		9급	1	행정 1
차 량 민 원 과	일반직	소계	23	
		5급	1	행정·공업 1
		6급	4	행정 2, 행정·세무 2
		7급	6	행정 4, 세무 1, 공업 1
		8급	9	행정 8, 세무 1
		9급	3	행정 2, 공업 1
도 로 과	일반직	소계	29	
		4급	1	기술 1
		5급	1	행정·시설 1
		6급	8	행정 2, 공업 2, 시설 3, 행정·시설 1
		7급	7	행정 2, 공업 2, 시설 3
		8급	11	공업 1, 시설 7, 기계운영 1, 행정·시설 2
		9급	1	공업 1
도 시 계 획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sup>5</sup>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6	행정 1, 시설 2, 행정·시설 2, 녹지·시설 1
		7급	11	행정 3, 시설 8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2	시설 2
건 축 과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시설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6급	5	행정 1, 시설 4
		7급	4	시설 4
		8급	12	행정 1, 공업 3, 시설 8
		9급	8	시설 7, 행정·시설 1
주 택 과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시설 1
		6급	4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시설 1
		7급	5	사회복지 1, 시설 4
		8급	6	시설 5, 행정·시설 1
		9급	3	사회복지 1, 시설 2
도 시 재 생 과	일반직	소계	25	
		5급	1	행정·시설 1
		6급	7	행정 1, 시설 2, 사무운영 1, 행정·시설 3
		7급	7	행정 1, 시설 6
		8급	5	행정 2, 시설 3
		9급	5	행정 1, 시설 4
토 지 정 보 과	일반직	소계	27	
		5급	1	행정·시설 1
		6급	6	시설 5, 행정·시설 1
		7급	12	행정 1, 시설 10, 행정·시설 1
		8급	7	행정 3, 시설 3, 행정·시설 1
		9급	1	시설 1

[별표 4]

###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134</b>	
보건 행정 과	일반직	계	24	
		4급	1	기술 1
		5급	4	의무 3,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4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7급	5	보건 2, 의료기술 1, 보건·간호 2
		8급	9	행정 2, 보건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간호 4, 보건·간호 1
		9급	1	행정 1
감염 병 대응 과	일반직	계	24	
		5급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6급	3	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11	보건 1, 의료기술 2, 간호 2, 보건·간호 3, 보건·의료기술·간호 2, 운전 1
		8급	8	간호 1, 운전 1, 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9급	1	운전 1		
건강 증진 과	일반직	계	51	
		5급	2	의무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9	행정 1, 간호 1, 식품위생·간호 1, 보건·간호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 1
		7급	21	보건 2, 의료기술 1, 간호 14, 보건·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8급	17	의료기술 1, 간호 13, 행정·간호 1, 식품위생·의료기술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 1
		9급	2	사회복지 1, 보건 1
치매 정신 돌봄 과	일반직	계	35	
		5급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6급	5	사회복지·간호 1, 의료기술·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7급	9	간호 9
		8급	15	사회복지 2, 간호 13
9급	5	행정 1, 보건 1, 의료기술 2, 행정·시설 1		

[별표 5]

##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47</b>	
검 단 출 장 소	일반직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6급	12	행정 1, 세무 2, 공업 1, 녹지 1, 시설 2, 운전 1, 행정 · 세무 1, 행정 · 농업 1, 행정 · 보건 1, 행정 · 공업 · 시설 1
		7급	16	행정 3, 세무 2, 공업 1, 농업 1, 녹지 2, 보건 1, 시설 5, 행정 · 세무 1
		8급	13	세무 1, 녹지 1, 보건 3, 시설 6, 행정 · 농업 1, 환경 · 공업 1
		9급	5	행정 2, 세무 1, 녹지 2

[별표 6]

##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b>합 계</b>			<b>369</b>	
검 암 경 서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 공업 · 농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8	행정 5,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연 회 동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3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3,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9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청 라 1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7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4	행정 4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청 라 2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환경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8	행정 5,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청 라 3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무 <sub>8</sub> 운영 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급 별 내 역
		8급	6	행정 4(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1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보건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가 정 2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세무 · 방송통신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1(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정 3 동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신 현 원 창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석 남 1 동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6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구 분	직 종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석 남 2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환경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7	행정 3, 사회복지 3, 운전 1
		9급	1	행정 1
석 남 3 동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 녹지 1, 행정 · 사회복지 2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1, 운전 1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3
		9급	2	행정 1(행정복지), 사회복지 1
가 좌 1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녹지 1
		6급	2	행정 · 세무 · 공업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8급	7	행정 4,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가 좌 2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방송통신 1
		6급	3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사무운영 1
		7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가 좌 3 동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공업 1
		6급	4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2, 사무운영 1
		7급	2	행정 2
		8급	6	행정 2, 사회복지 4
		9급	4	행정 3, 사회복지 1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가 좌 4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환경 1
		6급	2	행정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3	행정 3
		8급	4	행정 1, 사회복지 2, , 운전 1
		9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검 단 동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농업 1
		6급	3	행정 · 사회복지 2, 행정 · 세무 · 농업 1
		7급	8	행정 3, 사회복지 2, 운전 1, 사무운영 1, 행정 · 사회복지 1
		8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9급	4	행정 1, 사회복지 3
불로대곡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6급	3	행정 1, 운전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5	행정 3, 사회복지 2
		8급	4	행정 2(행정복지 1), 사회복지 2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원 당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보건 · 시설 1
		6급	2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방송통신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당 하 동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6급	2	행정 · 세무 1, 행정 · 사회복지 1
		7급	4	행정 2, 사회복지 2
		8급	6	행정 3, 사회복지 2,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오류왕길동	일반직	소계	16	

구 분	직 중	직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5급	1	행정·공업·농업 1
		6급	2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 1
		7급	5	행정 2, 사회복지 2, 운전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3	행정 3
마 전 동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사회복지·녹지 1
		6급	2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7급	3	행정 2, 사회복지 1
		8급	5	행정 2, 사회복지 3
		9급	3	행정 2, 운전 1
아 라 동		소계	16	
		5급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6급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간호 1
		7급	6	행정 4, 사회복지 2
		8급	5	행정 3, 사회복지 1, 운전 1
		9급	2	행정 1, 사회복지 1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47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57-4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76	20	국지 도로	514	석남산139-14 (대로1-24)	석남223-300 (대로2-29)	일반 도로		인고1406호 (88.11.25)	
변경	중로	1	76	20	국지 도로	584	석남동 257-4 (대로1-78)	석남223-300 (대로2-29)	일반 도로		인고1406호 (88.11.25)	
기정	중로	2	117	15	국지 도로	1,238	대1-24	광2-4	일반 도로		인고 제90-64호 (90.05.25)	
변경	중로	2	117	15	국지 도로	1,207	원창382-109(대 로1-78)	원창196-16 (광로2-4)	일반 도로		인고 제90-64호 (90.05.25)	
기정	소로	1	111	10	국지 도로	239	석남223-321 (중로1-68)	석남650-22 (대로1-2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111	10	국지 도로	266	석남223-321 (중로1-68)	석남650-135 (소로1-17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73	10	국지 도로	617	석남산139-14 (대로1-24)	석남223-179 (소로1-6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173	10	국지 도로	725	석남223-180 (소로1-111)	석남223-179 (중로1-6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74	10	국지 도로	583	석남산139-14 (대로1-24)	석남223-179 (대로2-2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174	10	국지 도로	695	석남257-4 (대로1-78)	석남223-179 (대로2-29)	일반 도로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76	중로1-76	· 연장증가(L=514m→L=584m, 증 70m) · 기점위치변경(석남산139-14→석남257-4)	· 북향배후단지-봉수대로 도로구역(대로1-78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로2-117	중로2-117	· 연장감소(L=1,238m→L=1,207m, 감 31m) · 기점위치변경(대1-24→원창382-109) · 종점명칭변경(광2-4→원창196-16)	· 북향배후단지-봉수대로 도로구역(대로1-78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소로1-111	소로1-111	· 연장증가(L=239m→L=266m, 증 27m) · 종점위치변경(석남650-22→석남650-135)	· 북향배후단지-봉수대로 도로구역(대로1-78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소로1-173	소로1-173	· 연장증가(L=617m→L=725m, 증 108m) · 기점위치변경(석남산139-14→석남223-180)	· 북향배후단지-봉수대로 도로구역(대로1-78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소로1-174	소로1-174	· 연장증가(L=583m→L=695m, 증 112m) · 기점위치변경(석남산139-14→석남257-4)	· 북향배후단지-봉수대로 도로구역(대로1-78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48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주차장,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5번지 일원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서구 석남동 219-15번지 일원	-	증)3,648	3,648	-	지하 주차장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 주차장 신설(중복결정) - 위치: 석남동 219-15번지 일원 - 면적: 3,648㎡	· 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

#### 나. 공간시설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 석남, 신현동	237,040	-	237,040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주차장 중복결정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 녹지내 주차장 중복결정	· 완충녹지 지하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중복결정

###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4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5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4.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4-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37-9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5 (백석동)	20090922	옛 지연부락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들로라 명명	검안역로열파크에티푸르지오2단지현장
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7-16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17번길 64 (마전동, 브룩사이드)	20081231	가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브룩사이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7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 100 (마전동, 브룩사이드)	2008123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브룩사이드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1	인천광역시 서구 기복로 13 (석남동)	20090922	서구 4대 재래시장의 하나인 기복시장 및 기복골을 관통하는 도로	인천 석남동 에스엔케이 복합물류센터
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45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1길 5-1 (대곡동)	20201123	금사래길의 서점에서 첫번째 분기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46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1길 5 (대곡동)	20201123	금사래길의 서점에서 첫번째 분기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34 (원당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다섯번째 도로	제일프라자 (검단신도시 c10-1-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0호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 3.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원당동 · 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A-1)용지(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15	3,058.0	2	1,196.9		A-1	15	3,058.0	2-1	733.7
									2-2	463.2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2	○ 획지 분할 - 2 → 2-1, 2-2	○ 획지 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A-1)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기정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변경 1-1, 2-1, 2-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BL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1호

##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왕길동·당하동 일원

### 3. 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검단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구 마전동· 원당동·당하동 일원	999,838.6	-	999,838.6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B-1: 다세대 및 연립)(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B-1	66	8,410.7	6	1,195.8		B-1	66	8,410.7	6	1,195.8	
			7	588.7					7	588.7	
			9	512.4					9	512.4	
			10	282.6					10	282.6	
			11	494.0					11	494.0	
			12	1,007.3					12	1,007.3	
			14	2,032.8					14	2,032.8	
			15	446.2					15	446.2	
			16	221.6					16	221.6	
			18	410.2					18	410.2	
			19	269.6					19	269.6	
			20	267.2					20	267.2	
			-	-					-	-	

■ 공공시설용지(E-4)(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E-4	66	682.3	8-2-1	682.3	종교시설	E-4	-	-	-	-	
	71	266.8	7	266.8	종교시설		71	266.8	7	266.8	종교시설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E-4 → B-1	66(8-2-1) →66(21)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 공공시설용지(E-4) 66가구 8-2-1획지 → 공동주택용지(B-1) 66가구 21획지	○ 건축용도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B-1: 다세대 및 연립)(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용지)	기 정	46(6), 48(1-1,1-2), 49, 50, 51, 53(6-5제외), 54(7제외), 55(3제외), 56, 60(2), 66(6,7,9~16, 18~20), 71(7,9제외), 72(17제외), 73, 74	용 도	허용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 경	46(6), 48(1-1,1-2), 49, 50, 51, 53(6-5제외), 54(7제외), 55(3제외), 56, 60(2), 66(6,7,9~16, 18~21), 71(7,9제외), 72(17제외), 73, 74	높 이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단,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하여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공공시설용지(E-4)(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4 (공공시설용지)	기 정	66(8-2-1), 71(7)	용 도	허용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 경	71(7)	높 이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3층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51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2. 4. 11. ~ 2022. 4. 25(15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5가9451 등 8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 행정 지 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

##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25가9451	투스카니	이*기	2022.3.2.
2	12너8073	SM3	방*희	2022.3.11.
3	06도0907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전*우	2022.3.15.
4	86머5857	마이티	(주)환**인	2022.3.22.
5	48마4963	K9	이*식	2022.3.24.
6	308누5802	Tiguan Allspace 2.0 TDI	노*서	2022.3.28.
7	65구1705	스포티지	조*미	2022.3.28.
8	93저5833	포터 II (PORTER II)	김*옥	2022.3.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52호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사용 개시(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101(2022. 1.14.)호로 공고한 사항 중 변경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개시(변경) 공고합니다.

2022. 4. 1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해서 모든 토지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 시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신청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을 위한 환지예정지 사용이라도 증환지 토지 및 기반시설 미완료된 토지는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증환지 토지: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잔금 납부 완료되어야 토지사용 가능
  - \* 공사 진행중 토지: 기반시설(도로, 우·오수 등) 조성 이후 토지사용 가능(별도협이)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환지예정지 측량 성과품을 받은 후 측량을 시행하여 예정지 사용 가능면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토지 사용을 위해서는 “붙임 1”의 조건을 준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해야 하며, 측량오차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4. 예정지 사용 후라도 환지처분 후 청산금 미납 시 등기촉탁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환지예정지 사용조건 1부  
2. 환지예정지 사용가능 토지 지형도면 1부  
3.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4. 환지예정지 측량 성과품 1부. 끝.

## I. 사용개시일(변경없음) : 2022. 1. 14.(홈페이지 공고일)

## II. 환지에정지 사용 가능토지(변경없음)

구 분	블 록(B) · 로 트(L)				
근린생활시설	1B 6L,	7B 1~2L,	8B 1~4L,	8B 7~8L,	8B 10~13L,
	9B 1~5L,	10B 1~3L,	11B 2~4L,	11B 6L,	11B 1-1~1-2L,
	13B 1~6L,	13B 8L,	16B 1L,	16B 3~4L,	18B 1~6L,
	19B 1~4L,	20B 1~2L,	21B 1~3L,	22B 1~11L,	22B 14~20L,
	23B 1~4L,	27B 1~3L,	28B 3L,	28B 7~12L,	29B 10~11L,
	30B 1~5L,	31B 1~2L,	31B 5L,	34B 1L,	35B 1~9L
	3B 1~5L	26B 1L	28B 1L		
대형할인점	12B 1~21L,		12B 11-2-1,		12B 11-2-2L
도시지원시설	11B8~21L,		33B 3L~7L		

\* 환지처분 전 토지이용계획 변경 될 수 있음.

\* 3블럭(5필지)은 현재 기반시설 마무리 중으로 별도 협의 필요

## III. 증환지 토지(변경없음)

구 분	블 록(B) · 로 트(L)					
업무시설	1B 1~5L,	2B 1L,	2B 3L,	3B 1~5L,	5B 1~5L,	6B 1~4L,
근린생활시설	1B 10L,	8B 5~6L,	8B 9L,	10B 4L,	11B 5L,	13B 7L,
	13B 9~11L,	14B 1~5L,	16B 2L,	17B 1~6L,	26B 1~11L,	28B 1L,
	28B 5~6L,	28B 13~14L,	29B 1~6L,	30B 6L,	31B 3L,	34B 2L
도시지원시설	33B 1~2L					
기타시설용지	2B 2L,			4B 1L		

\*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이후 사용가능

단, 'IV. 기반시설 미완료된 토지' 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반시설 조성 이후 토지사용 가능

## IV. 기반시설 미완료된 토지(변경없음)

구 분	블 록(B) · 로 트(L)		
업무시설	5B 1~5L,		6B 1~4L
근린생활시설	26B 2L,	28B 2L,	29B 1~9L

\* 기반시설(도로, 우·오수 등) 조성 이후 토지사용 가능

**붙임 1****환지에정지 사용조건**

1. 환지에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내용 및 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인허가 변경 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2.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내용(승인조건 및 협의내용 포함)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토지사용 전 반드시 도시계획과로 환지에정지 좌표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선정하여야 하며(개발계획상 면적과 도시계획과에서 제공한 환지에정지 측량면적이 다를 경우 도시계획과 문의) 측량 오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습니다.
4. 지적확정측량 완료 이전 또는 면적 정산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필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건축 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토지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승인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결정하여야 합니다.
5.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한 허가, 동의, 승인 등에 대하여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6. 설계 및 시공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환지면적 초과 사용시 토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 토지 사용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7.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인접지역과의 지반고, 해당부지 주변 부지조성(공원 등) 및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계획을 인지하여야 하며, 기 계획된 지상노출시설물(한전주, 가로등, 신호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위치 및 인접 경계 계획고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 토지사용자는 우수, 오수, 상수관, 옹벽처리 등 설계 시 반드시 우리 구와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해당부지 인근 각종 지하매설물(상수도, 우·오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우리 구 입회 하에 연결한 후 도시 기반시설 복구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비산먼지 및 소음 등 발생 저감 등 민원발생치 않도록 살수차 운행 및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0. 본 토지 인접도로상의 상·하수도등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될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본 토지와 인접도로 공사 시 공사계획상 없는 연결부분은 본인(사용자)이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부합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11. 해당부지 인근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토지사용자에 의한 공사로 인해 오염, 훼손 및 파손될 경우 즉시 우리 구에 알리고, 토지사용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후 우리 구의 확인을 얻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원인자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관련부서에서 부과 시 납부하여야 하며, 오수관접합부 CCTV(단, 별도로 배수설비를 연결할 경우)과 사진(전, 중, 후) 및 필지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현장 부근에는 위해방지시설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사고등 민원에 대하여는 자체 책임하에 조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14. 본 환지사용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사용자)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15.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준공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6. 전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시행 등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7. 토목공사 변경으로 현장 여건이 변할 수 있습니다.
18. 본 사업 완료 후 확정 시 발생하는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는 확정 후 청산금으로 정산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19. 경서3구역은 도시개발 진행중인 사업지구로 개발계획 등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하며, 사전 환지예정지 사용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서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붙임 2**      **환지예정지 사용 가능토지 지형도면**



- \* 과도대상 필지(증환지토지) 및 기반시설 공사 미완료 토지는 개별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득하여야 함.
- \* 환지처분 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구역명	종 전 의 토 지				환 지 예 정 지			사 용 면 적	사 용 목 적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지 목	지 적	브 록	롯 트	면 적			주 소	성 명
경서 3구역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붙임 4**

**환지에정지 측량 성과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 2022-66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재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재공고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재공고

2. 공고기간: 2022. 4.11. ~ 2022. 6.10.

###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생활폐기물 529.8톤/일(2025년 기준)

나.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강화군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40톤/일(120톤/일×2기)

2) 음식물자원화시설 120톤/일

3) 생활자원회수시설 220톤/일

\* 상기 계획은 향후 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 가. 입지선정 기준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 2)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쉬운 지역
- 3) 소각열 활용이 쉬운 시설이 인접한 지역
- 4) 차량의 진·출입이 쉽고 교통혼잡이 적은 지역
- 5)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제외)
- 6)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 등

### 나. 입지선정 방법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입지선정
- 3)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 가) 구성인원: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
  - 나) 위원구성
    -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 7명 이내)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3)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2명 이상 4명 이내)
    -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명 이상 4명 이내)

## 5.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가. 기 간: 2022. 4.11. ~ 2022. 6.10.

나. 범 위: 인천광역시 서구 전역

다. 응모자격: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등

\* 신청지역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후보지 조건

1) 부지면적 39,300㎡(자연녹지지역 기준)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서구 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제외)

마. 구비서류: 입지 후보지 응모 신청서, 입지 후보지 응모 세대주 동의서

바.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2022. 6.10.(금) 18:00까지 방문 접수

사.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과(자원순환시설팀)

## 6. 입지 결정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가. 주민편익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시설공사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나. 주민지원기금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기금 지원

## 7. 기타사항

-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560-3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b>입지 후보지 응모 신청서</b>						
신청인 (대표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지역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동의	동명	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	비고	
응모사유						
<p>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 후보지를 신청합니다.</p> <p>붙임: 입지 후보지 응모 세대주 동의서</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인)</p>						
<b>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b>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66호

## 수용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2. 25.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보를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보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2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산34-7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재결서 정보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6.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 미상

7.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2. 4. 11. ~ 4. 25. (15일간)

## 8.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6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따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골목형상점가명	상인회(대표)	위 치	규모	결과
푸른솔빛 골목형상점가	푸른솔빛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권성안)	푸른로14번길 12 ~ 솔빛로 86 일원	- 총면적 2,910㎡ - 점포수 44개	지정
원당 중앙로 골목형상점가	원당 중앙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임태병)	고산후로121번길 25 ~ 원당대로859 일원	- 총면적 3,704㎡ - 점포수 56개	지정
단봉로 골목형상점가	단봉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김영훈)	단봉로 97 ~ 단봉로 99 일원	- 총면적 2,009㎡ - 점포수 39개	지정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668호

##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 단독주택용지(B용도)(변경)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9	2,009.7	3-1	90.2		2-9	2,009.7	3-1	90.2	
		3-3	212.2				3-3	212.2	
		4	347.8				4	1,366.1	
		5	108.8				-	-	
		6	182.4				6	182.4	
		7	158.8				7	158.8	
		8	909.5				-	-	

#####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4, 5, 8	○ 획지 합병 - 4 : 347.8㎡ - 5 : 108.8㎡ - 8 : 909.5㎡ ⇒ 4 : 1,366.1㎡	○ 획지합병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 (☎032-560-6872)